

의안검토보고

의안 번호	제105호		
건 명	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 월 일	1997.6.5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하영규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기본법 동법시행령의 개정, 정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생활지도,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, 장려 및 지원등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절차 등에 관해 근거를 마련코자 신규조례 제정을 제안한 것임.

나. 주요요지

- 지도위원의 위촉 (안 제2조)
 - 1)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,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
 - 2) 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동장, 청소년 단체의 장, 사회복지 단체의 장,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

- 지도위원의 임무 (안 제4조)
 - 1)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
 - 2)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, 장려 및 지원
 - 3)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
- 지도위원의 수 (안 제5조)
동별 10인 이내
-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(안 제9조)
구. 동 단위

2. 검토결과

- 우리구는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에 대체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(제정 91.12.31, 시행 93.1.1)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(제정 92.12.31, 시행 93.1.1)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,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, 그들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구, 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, 운영해 오다가 (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93.10월 폐지)
-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(개정 95.12.29, 시행 96.6.30)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됨에 따라,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절차등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신규조례(안)을 보면,
지도위원의 위촉절차, 결격사유, 임무, 지도위원의 수, 지도

위원에 대한 증표교부, 필요경비지원, 청소년지도 협의회 구성 등 10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그 입법내용은 문화체육부 조례표준안에 준거하여 입안한 것으로서, 모법인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나 명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, 조문의 표현형식도 적합하다고 사료됨.

3. 관련법규

(개정전 구법)

○ 청소년기본법 제22조 (청소년지도위원)

- ① 시장, 군수, 구청장 (자치구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대통령령**으로 정한다.

○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(청소년지도위원)

- ①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, 당해 읍.면.동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- ②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.면.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, 당해 읍.면.동의 자연부락, 인구,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- ③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1. 청소년의 보호.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
 2. 수련활동의 여건조성, 장려 및 지원

3.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

4.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리한 환경의 조성
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

- ④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청소년 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, 면,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(개정후 신법)

○ 청소년기본법 제22조 (청소년지도위원)

- ① 시장, 군수, 구청장 (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다)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(개정 95.12.29)

○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(청소년지도위원)

- ① 및 ② 삭제 (96.6.29)
-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(개정 96.6.29)
 - 1. 청소년의 보호,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
 - 2. 수련활동의 여건조성, 장려 및 지원
 - 3.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

4.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리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

- ④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청소년 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. (개정 96.6.29)
- 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 다.
- ⑥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.군.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같다) 읍,면,동단 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청소년지 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. (개정 96.6.29)

4. 기타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- 합의 : 청년82501~516(96.4.29)호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이첩 시달
- 첨부 :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

(初見)

서 울 특 별 시
(관 인 생 략)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484~5 / 전송 725-4219
처리부서 : 청소년과 (종로구 수송동 종로구청내 별관 5층) 담당 안병기

문서번호 청년 82501- 516

시행일자 1996. 4. 29.

수신 수신처참조

참조 가정복지과장

선	결		지	
접	일자 시간	1996. 5. 6	시	구청장
수	번호	1849	재	복지국장
	처리과		공	복지과
	담당자		람	담당자

제목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 이첩 통보

- 문화부 청기 82501-196(96. 4. 22)호 및 청기 82501-201(96. 4. 23)호의 이첩 통보입니다.
- 청소년기본법 개정(95. 12. 29)에 따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관보 13296호(96. 4. 26)로 입법 예고되어 우리시의 의견을 문의하였으니, 관보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'96. 5.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소년기본법시행령등 정비와 관련,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문화체육부 표준안을 이첩 통보하니 조례제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정대상 조례

-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, 운영 (법 제13조 관련)
-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, 운영 (법 제22조 관련)
- 지방청소년 단체협의회 구성, 운영 (법 제25조의2 관련)

나. 시행시기 : '96. 6. 30

첨 부 조례표준안 3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청소년과장전결

수신처 서구 1~25

문화체육부

우110-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-1 / 전화 (02) 734-0183 / 전송 735-1630
문서번호 청기 82501-196
시행일자 1996.04.22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 통보

1. 청기 82501-14 ('96.1.15)의 관련입니다.
2. 청소년기본법 개정('95.12.29)에 따른 하위법령정비와 관련,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표준안을 작성 통보하오니 조례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정대상조례

-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·운영(법 제13조 관련)
-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·운영(법 제22조 관련)
-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·운영(법 제25조의2 관련)
-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사용(법 제66조의2 관련)

나. 시행시기 : '96.6.30

첨부 조례 표준안 4부. 끝.

문화체육부장

수신처 각시·도



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 표준안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"지도위원"이라 한다)의 자격,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지도위원의 위촉) 지도위원은 ~~기장·군수~~ 구청장(자치구청장, ~~출장소장 포함~~)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상, 사회복지단체의 장, ~~당회~~을 ~~그는~~ 등이 잔, 정관관서의 잔 ~~과는~~ ~~부과장~~의 수천은 ~~면~~아 외~~후~~한다.

제 3조 (지도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

2. 한정치산자

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

제 4조 (지도위원의 (임무))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.

1.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

2.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·장려 및 지원

3.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

4.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

5.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·
선도·지도 및 경화활동

6.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·지원활동등

③ 지도위원은 그 업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
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경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
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지도위원의 수) 지도위원의 수는 읍·면·동별로 10인이내
로 하되 당해 읍·면·동의 자연환경, 인구, 학교위치, 기타 지역
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제 6조 (증표교부) ~~최장·군수~~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
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
은 별표와 같다.

제 7조 (필요경비등 지원) ~~최장·군수~~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
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~~수당~~ 여비,
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 8조 (임기)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)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
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
효율적으로 전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·시·군·구
시·군·군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~~최장·군수~~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
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등 필요를 지원하고 있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내용에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.

부 록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표 >

청소년지도위원회의 규격·제작 및 기재사항 (제7조관련)

(앞 면)	(단위 : cm)	(뒷 면)
청소년지도위원회 ①	0.3 1 4 ⑤	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(인)
② ③ ④ ○ ○ 을.연.등	0.75 0.75 1 0.3 4.9×7.5	이 증명서 우편 문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		0.3 1.7 3.2 0.3 5.5

- 비 고) 1.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/m² 으로 한다.
 2. 청소년지도위원회의 ①내지 ⑤의 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 ①사진 (4.9cm×4cm)
 ②청소년지도위원회 번호
 ③성 명
 ④소속기관명
 ⑤철인(발급기관의 철인)
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